

경운대학교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출연하는 학술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관장) 기금의 관리업무는 산학연구처에서 총괄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이라 함은 재단 출연금, 외부기관 기부금, 연구 간접경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후원된 재산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행정지원처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1.10.01.>

③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4조 2항의 계좌에 적립한다.

제5조(영수증의 발급 및 사의(謝意)의 표시) 기금의 기부 시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의(謝意)를 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용도) 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하며, 기금적립에 의하여 발행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은 산학연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내 학술연구비
2.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비
3. 연구 활동 인력의 인건비
4.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비
5. 기타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